

'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

(“21. 12. 준법경영부)

1. 개요

- ☐ (목적) 경영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자(직원, 고객 등)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식별하고, 필요시 개선대책을 마련 및 추진
- ☐ (평가항목)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(기관운영 전반의 인권리스크 측정)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(주요사업의 인권리스크 측정)로 구성

2. 인권영향평가 결과

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- ① (인권경영체제의 구축) 인권경영 제도화 위한 필요조치 이행 완료
- 인권경영 성과 확인시 이해관계자의 설문 등 의견수렴 필요
- ② (고용상의 비차별) 채용·복리후생제도·교육·승진에서 차별하지 않음
- ③ (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) 노조 설립, 노동문제 토론 환경 조성
- ④ (강제노동의 금지)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른 능률적인 노동환경 조성
- ⑤ (산업안전 보장) 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 준수
- ⑥ (책임있는 공급망 관리) 협력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
- 국가계약법 등 법령 개정시 인권침해 발생 협력회사에게 시정 요구 및 관계단절 가능하도록 내규 반영 필요
- ⑦ (지역주민의 인권보호)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
- ⑧ (환경권 보장) 환경경영체제 수립, “재난대비 위기 관리 매뉴얼” 운영
- ⑨ (소비자 인권 보호) 소비자정보(개인·신용·행정정보) 보호 제도 운영
- ⑩ (임직원 인권 보호) 성희롱·성폭력·직장내괴롭힘 대응 제도 운영
- ⑪ (모성보호 및 장애인보호) 임신 및 육아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

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- 고객보호 및 고객정보보호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제공. 끝.